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온라인광고 관련 계약, 개인 간 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하여, 설립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19조제4항)

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④ 위원회는 <u>업무를 효율적으로</u> <u>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</u> <u>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</u> <u>회를 둘 수 있다.</u> ⑤ (생 략)	제1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분쟁조정 업무</u> ----- ----- <u>법제32조제3항</u> <u>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</u> <u>별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</u> <u>있으며,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</u> <u>으로 조정부를 구성할</u> ---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141